

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

제정 2010. 1. 6 조례 제1707호
일부개정 2010. 3. 26 조례 제1715호
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라 함은 광명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(동 및 통조직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
2.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·활동경비
3.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·훈련경비
4. 삭제 <2010. 3. 26>
5. 기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6>

제5조(보험가입)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6조(포상)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3. 26 조례 제171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